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96
----------	-----

2024. 1. 30.(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4년 1월 15일

다. 회부일자: 2024년 1월 16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월 24일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홍만표)

가. 제안이유

○ 교육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의 기구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한시기구 설치(안 제3조의2)

- ① 본청 한시기구 설치 근거 조항 마련

2). 직속기관 분원 조정

- ① (현행)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환경교육센터 ⇒ 본청 창의특수교육과 소속화
(안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 ② (현행)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 놀샘이음터팀 ⇒ 충청북도중원교육
문화원 소속화 (안 제13조, 제35조, 제37조)
- ③ (현행)충청북도교육도서관 진천문학관 ⇒ 본관 팀으로 편제 (안 제14조, 제15조)
- ④ (현행)충청북도학생수련원 옥천분원 ⇒ 본원 팀으로 편제 (안 제20조)
- ⑤ (현행)충청북도국제교육원 충주분원 ⇒ 북부분원으로 통합
(현행)충청북도국제교육원 북부, 남부, 중부분원 ⇒ 본원 팀으로 편제
(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24. 3. 1.자 조직개편으로 본청에 한 시기구 설치와 직속기관의 기구를 정비함으로써 교육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 됨
- 또한 이번 조직개편은 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업무 재구조화 및 인력 재배치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직제 편성을 방안으로 효율적인 윤력 운용을 위하여 교육감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조직을 편성한 것으로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 됨

- 안 제3조의2는 교육감 공약사업 다채움이 2024년 3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적용 되어 시스템을 고도화안정화 하고자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다채움 구축·운영팀을 본청에 이관하여 기획국 편제의 ‘미래교육추진단’으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며, 유기적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한 개편이라고 생각 됨
- 안 제6조제1항제23호는 교원인사과 교권보호지원센터가 부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편제됨에 따라 교육국의 사무분장에서 ‘교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최근 교권침해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및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됨
- 안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는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환경교육센터가 본청 창의특수교육과로 편제 됨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분원에 대한 조항, 업무 관장을 삭제하는 것이며, 직속기관의 업무 팽창을 억제하고 본청 중심의 환경 교육 추진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 됨
- 안 제13조, 제35조, 제37조는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 북부분원 놀샘이음터 팀이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으로 편제됨에 따라 학생 놀이 교육 및 학부모 연수에 관한 업무 관장과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며, 동일 지역에 위치한 기관에 소속화 하여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됨
-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제20조는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진천

문학관을 본관 팀으로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옥천 분원을 본원 팀으로 편제하여 분관장 및 분관에 대한 조항 삭제와 편제 팀의 위치 조항을 변경하고

- 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는 충청북도국제교원 충주분원을 북부분원으로 통합, 북부·남부·중부 분원은 본원 팀으로 편제됨에 따라 분원장과 분원에 대한 조항 삭제와 편제 팀의 위치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이는 직속기관 팽창을 억제하는 한편, 인력 운용에 있어 효율성이 높다고 사료 됨

- 다만, 인력재배치에 따른 정원 축소 및 직제 조정 업무 등 조직개편 대상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업무 분석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적극 해소하는 등 조직 갈등 예방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미래교육추진단을 2027년 2월 28일까지 둔다.

② 제1항의 미래교육추진단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6호 중 “과학·수학·융합·영재·발명·환경교육”을 “과학·수학·융합·영재·발명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영재 및 환경”을 “영재”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2494-1”을 “2494-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990”을 “990,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26”을 “26,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13,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인석로 381”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219”를 “219,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새마을길 10”으로 한다.

제37조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학생 놀이 교육에 관한 사항

10. 학부모 교육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관 및 각 과장”을 “담당관, 각 과장 및 단장”으로 한

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국장·과장 및 담당관”을 “국장·과장, 담당관 및 단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 등”으로 한다.

[별표 1]

직속기관 분원(관)의 명칭과 위치

직속기관	분원(관) 명칭	위치	관련조문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청단산업로 670	제13조의2 관련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제22조의2 관련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제주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자9길 29	제46조의5 관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략) 22. 삭제 23. <u>교권보호에 관한 사항</u> 24. ~ 27. (생략) 제9조(원장) ① (생략) ② <u>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제10조(업무) 자연과학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5. 삭제 6. <u>과학·수학·융합·영재·발명·환경교육</u> 진흥에 관한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미래교육추진단을 2027년 2월 28일까지 둔다. ② 제1항의 미래교육추진단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국) ① ----- -----. 1. ~ 21. (현행과 같음) <u><삭 제></u> 24. ~ 27. (현행과 같음) 제9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0조(업무) ----- -----. 6. <u>과학·수학·융합·영재·발명 교육</u> -----

사항

7. ~ 9. 삭 제

10. 과학, 수학, 융합, 발명,
영재 및 환경 관련 교원 연수
에 관한 사항

11. (생 략)

제10조의2(분원) 자연과학교육원
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
항을 관장한다.

1. ~ 4. (생 략)

5. 학생 놀이 교육에 관한 사항

6.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

7. (생 략)

제14조(설치) ① (생 략)

② 교육도서관은 충청북도 청주
시 서원구 충렬로 19에 둔다.
다만, 교육도서관의 일부는 충
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에 둔다.

제15조(관장) ① (생 략)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
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10. ----- 영재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업무)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7. (현행과 같음)

제1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2494-1, 충
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

제15조(관장)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조의2(분관) 교육도서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
표 1과 같다.

제18조(원장) ① (생략)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
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설치) ① (생략)
② 수련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에 둔
다. 다만, 수련원의 일부는 충
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5
9번길 33, 충청북도 충주시 충
주호수로 990,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 괴
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에 둔
다.

제23조(설치) ① (생략)
② 국제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
시 서원구 흥덕로 53에 둔다.
다만, 국제교육원의 일부는 충
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2
6에 둔다.

제24조(원장) ① (생략)

<삭 제>

제18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0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990,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

제23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26, 충청북도 제천
시 죽하로 13,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충청북도 진
천군 덕산읍 인석로 381---.

제24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
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의2(분원) 국제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
표 1과 같다.

제35조(설치) ① (생략)

② 중원교육문화원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에 둔다. 다
만, 중원교육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3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9에 둔다.

제37조(업무) 중원교육문화원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
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9. (생략)

[별표 1]

직속기관 분원(관)의 명칭과 위치

<삭제>

<삭제>

제35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219, 충청북도 충주
시 대소원면 대소새마을길 10--
-.

제37조(업무) -----
-----.

1. ~ 8. (현행과 같음)

9. 학생 놀이 교육에 관한 사항

10. 학부모 교육에 관한 사항

11. (현행 제9호와 같음)

[별표 1]

직속기관 분원(관)의 명칭과 위치

직속기관	분원(관) 명칭	위치	관련조문
충청북도자연 과학교육원	환경교육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80번길 17	제10조의2 관련
충청북도단재 교육연수원	북부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첨단산업로 670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새마을길 10	제13조의2 관련
충청북도교육 도서관	진천문화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	제16조의2 관련
충청북도학생 수련원	제천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제22조의2 관련
	옥천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충청북도국제 교육원	충주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제25조의2 관련
	북부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13	
	남부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중부분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인석로 381	
충청북도해양 교육원	제주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지9길 29	제46조의5 관련

직속기관	분원(관) 명칭	위치	관련조문
충청북도단재 교육연수원	북부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첨단산업로 670	제13조의2 관련
충청북도학생 수련원	제천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제22조의2 관련
충청북도해양 교육원	제주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지9길 29	제46조의5 관련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신설 2017. 5. 8., 2018. 2. 27.>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24.3.1.자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반영

2. 비용 발생 요인

- 행정장비 구입비, 사무실 이전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 리모델링비, 기관 내외부 현판 비용 등

3. 관련조문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기준 단가 및 견적가격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천원)	비 고
조직개편관련 물품구입 (OA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120,000	
사무실 재배치 비용 (이사비, 리모델링비, 통신선, 전기공사 등)	12,000	
일반 소모성 물품 구입비 (현판, 표찰, 안내도 등)	12,000	
합 계	144,000	

다. 재원조달방안: 자체수입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2024년 1회 사업으로 연도별 발생 비용 없음

6.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장 박영균